

충청북도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996. 8. 29
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6년 8월 20일

○ 회부일자 : 1996년 8월 21일

3. 제 안 이 유

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'96: 6.30일부로 시행되면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대상 항목이 일부 추가되거나 용어가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충청북도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 요 골 자

- 제4조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및 제4조와 관련된 별표의 조정가액별 수수료 산출표중 "알선, 조정"외에 "증거보전신청"을 추가
- 별표중 "분쟁조정신청수수료"를 "수수료"로, "환경오염피해청구액"을 "조정가액"으로 용어를 정립
- 별표중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본 경우, 추후 산정이 가능하게 될 때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

5. 검토 보고

충청북도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
본 조례안은

법률 제 5097호 ('95. 12. 29) 및 대통령령 제 15,034호 ('96. 6. 22)호로
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및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'96. 6. 30일부로 시행됨에
따라

제4조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및 제4조와 관련된 별표의 조정가액별 수수료 산출
표중 "알선.조정" 외에 "증거보청신청"을 추가하고 별표 "분쟁조정신청수수료"
를 "수수료"로 "환경오염피해 청구액"을 "조정가액"으로 용어를 정립하고
별표의 비고에 있어 "환경오염피해청구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액을
500만원으로 한다"를 "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
으로 하되,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"로
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

이는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별표의 규정중 "참가자의 환경오염 피해청구액"을 "참가인의 조정가액"으로
용어를 정립함에 있어 참가자를 참가인으로 한 용어선택에 대하여는 설명이
이루어질